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상훈법」 상 공무원 의제〉

■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431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개정안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근정훈·포장 현황	9

I.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2) 발의연월일 : 2025. 12. 19.
- 3) 회부연월일 : 2025. 12.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은 복무 및 처벌 등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국가의 국방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연구소 임직원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그 수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 「상훈법」의 서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소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 「상훈법」의 서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임직원의 지위) ----- ----- -----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과 「상훈법」에 따른 서훈에 관한 규정-- ----- --. ----- ----- ----- -----.

- 현행 「상훈법」 제2조, 제9조 및 제19조에서는 서훈의 종류로 각각 12개의 훈장과 포장을 규정하고 있음.¹⁾ 이들 훈·포장 가운데 근정훈장(제

14조)과 근정포장(제23조)의 수여 대상은 다른 훈·포장과 달리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한정하고 있음.²⁾

따라서 국가공무원은 「상훈법」 및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30년 또는 33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경우 각각 근정포장 또는 근정훈장의 수여 대상³⁾이 되고 있으나,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은 30년

1) 「상훈법」 제2조(서훈의 원칙)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9조(훈장의 종류)훈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대훈장
2. 건국훈장
3. 국민훈장
4. 무공훈장
5. 근정훈장
6. 보국훈장
7. 수교훈장
8. 산업훈장
9. 새마을훈장
10. 문화훈장
11. 체육훈장
12. 과학기술훈장

제19조(포장의 종류)포장은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勳格)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국포장
2. 국민포장
3. 무공포장
4. 근정포장
5. 보국포장
6. 예비군포장
7. 수교포장
8. 산업포장
9. 새마을포장
10. 문화포장
11. 체육포장
12. 과학기술포장

2) 「상훈법」 제14조(근정훈장)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사립학교 교원(「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23조(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3) 정부포상 업무지침 상 장기 재직 후 퇴직공무원에 대한 상훈(「상훈법」)

이상의 장기 재직의 경우에도 이들 서훈의 수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개정안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장기재직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경우에도 근정포장 또는 근정훈장의 수여 대상이 되도록 하여 임직원의 헌신과 기여에 대한 명예를 고취하고 사기 양양을 위한 것으로 다음의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첫째, 국방과학연구소는 1970년 설립 이래 육·해·공군 무기체계 및 미사일 등 국방전략기술 개발 등의 국방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구체적으로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 연구·개발, 시험·평가, 기술지원, 군용물자 연구, 민·군 겸용 기술개발, 시험평가 지원 등을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자주국방 완수에 기여해왔음.

이러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는 국가안보와 직결돼 국가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공공적 성격을 가지며, 연구개발 등의 결과물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공무원의 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장: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자 중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근정훈장을, 군인 및 군무원을 보국훈장을 수여▪ 포장: 재직기간이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퇴직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근정포장을, 군인 및 군무원은 보국포장을 수여 |
|---|

둘째,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에 따라 복무 및 형법 등 처벌 법규 적용 시 국가공무원에 의제되어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등 기본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음.

셋째,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⁴⁾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등 공무원에 준하는 혜택이 부여되는 입법례가 있음.⁵⁾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법」에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국가공무원 의제조항이 2015년도에 신설된 후 현재까지 국립묘지에 안장된 2건의 사례가 있음.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국립묘지 안장 및 보상 사례]

연번	직급	성명	순직일	순직 사유
1	선임연구원	기○○	'19.11.13.	시험 중 폭발사고
2	책임기술기사 (전문계약직)	김○○	'23.12.21.	화약 폭발사고

*자료: 국방부

- 4)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회의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 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카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음.

□ 다만, 이와 같은 개정안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원칙적으로 훈·포장 등 서훈 대상자는 「상훈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동법을 개정하여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개정안과 같이 개별법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⁶⁾

둘째,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퇴직포상 대상에 포함할 경우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이나 추가적인 유사입법 요구가 예상될 수 있음.

6) 현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 대상자가 아님에도 개별 법률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으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 대상자가 아님에도 개별 법률에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유일함.

[국방과학연구소와 다른 정부출연기관 간 규제 등 비교]

구분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법)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법)
규제	●비밀엄수 의무 위반시 <u>5년 이하</u>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u>2년 이하</u>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규정 준용 ●「공무원직장협회의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준용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제132조 규정 적용시 공무원 의제
특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 적용시 공무원 의제	

□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은 복무 및 처벌 등에 있어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으나, 장기근속에 대한 처우는 미비하므로 명예 고취와 사기 양양을 위해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의함.

반면, 행정안전부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퇴직포상 대상에 포함할 경우 다른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추가적 포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포상 대상이 정부출연 연구기관까지 확대되어 서훈이 과도하게 수여될 경우 서훈의 영예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퇴직포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12

※ 참고자료: 개정안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근정훈·포장 현황

□ 「정부포상업무지침」 규정 내용: 신분 및 재직기간에 따른 정부포상 수여

구분	33년 이상	30년 이상	28년 이상	25년 이상
공무원	근정훈장	근정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군인/군무원	보국훈장	보국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개정안 의결시 국방과학연구소의 근정훈·포장 운영 개요

구분	33년 이상	30년 이상	28년 이상	25년 이상
국방과학연구소원	근정훈장	근정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국방과학연구소 정년퇴직자 수(향후 5년 예상인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총 정년퇴직자	91명	100명	100명	114명	121명	526명
30년 이상 근속자	68명	80명	81명	91명	103명	423명
25년 이상 근속자	84명	90명	94명	109명	112명	489명
정부포상 대상 비율	92.3%	90.0%	94.0%	95.6%	92.6%	92.9%

□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 중 보국훈장 수여자 현황(최근 5년)

퇴직 연도	정년퇴직자 수	정년퇴직자 중 보국훈장 보유자	정년퇴직자 근속연수
2021	82	3	29.5년
2022	80	2	31.5년
2023	108	3	31.5년
2024	106	1	33.5년
2025	92	1	33.6년
합 계	488	11	

* 자료: 국방과학연구소